

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보고서

2014. 7. 14(월)
산업경제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: 2014. 7. 2
- 나. 제안자 : 인천광역시장
- 다. 회부일자 : 2014. 7. 2
- 라. 상정일자 : 2014. 7. 10(제216회 임시회 제5차 산업경제위원회)
 - 제안설명 : 조영근 환경녹지국장
 - 검토보고 :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구 남 회
 - 질의 및 토론
 - 수정가결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- 서울시에서 이전된 수도권매립지 부지매각 대금 및 향후 이전 될 부지매각 대금 등의 효율적 집행 관리를 위해 특별회계를 설치하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- 이 조례에 따른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의 범위를 정함.(안 제2조)
- 서울시 관련 조례에 따라 우리 시로 이전된 수도권매립지 부지매각 대금을 특별회계의 세입으로 정함.(안 제3조)
-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의 환경개선 및 주민복지증진 사업 등 특별회계의 세출을 정함.(안 제4조)
- 잉여금의 처리, 예비비 및 일반회계 준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.
(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○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

- 별도의 특별회계를 설치·운영함으로써 해당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한다는 취지에서 볼 때 본 조례 제정에 대한 이견은 없으며, 또한 조례안의 형식과 내용을 검토한 결과 적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됨.
- 다만, 안 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세입원은 「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및 「서울특별시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조례」에 따라 서울시에 설치된 기금에 의존하는 만큼 적기에 재원 확보가 필수적인 바, **서울시의 연도별 자금 이전 계획과 재투자 불이행 시 인천시의 대응방안에 대한 설명과 2013년도에 전입된 서울시 전입금 200억 원이 적기에 투자되지 못하였는바, 동 조례제정 및 사업추진 지연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,**
- 아울러, 특별회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조성한 기금으로 추진하는 「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」과 중복되어 불필요하게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실효성 있는 환경개선사업 추진이 요구되는 바, **향후 환경개선사업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.**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《 김진규 의원 》

- 서울시의 전입금을 조례를 제정하여 사용하는데 폐촉법에 저촉되는 것은 아닌지?
⇒ 서울시 전입금은 폐촉법을 근거한 서울시 조례로 조성된 기금에서 이전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음.(환경녹지국장)
- 계양구의 경우 수도권매립지 수송로 주변이 가장 큰 피해지역인데 계양구 일원으로 하면 너무 범위가 넓은 것 아닌가?
⇒ 조례에서 대상지역을 일부지역으로 한정하게 되면, 사업추진 시 논란이 예상되므로 향후 시행규칙에서 탄력적으로 정하고자함.(환경녹지국장)

《 오홍철 의원 》

- 서울시가 사업비 투자를 조건으로 매립지 사용연장을 요구하는 건 아닌지?
⇒ 2년간 서울시와 협의하면서 매각대금의 조건 없이 투자하는 것으로 합의하였고, 만약 연장을 요구한다면 단호하게 대처하겠음.(환경녹지국장)

《 김정현 의원 》

- 서울시 이전금이 2016년까지 투자하게 되어 있는데 조례에서 존치기간을 명시할 필요는 없는가?
⇒ 서울시의 이전금은 향후 발생될 수 있는 매각대금이 포함되므로 조례 존치기간을 정하면 이후 매각대금 추가 발생 시 다시 제정해야 하므로 추진 상황에 따라 존치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.(환경녹지국장)
-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지원대상의 범위는?
⇒ 현재 폐축법 상 수도권매립지 반경 2km지역으로 정해져 있으며, 동 조례의 대상지역은 별도의 용역을 통해 보다 확대하여 대상지역을 정하고 당초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추진 예정임.(환경녹지국장)

5. 토론요지

가. 찬 성 : 없 음

나. 반 대 : 안영수·정창일·박병만·김정현·김진규·오홍철·유제홍 의원

6. 심사결과

- 수정가결(재석의원 7명 찬성 : 7명)

7. 기타 사항

- 특이사항 없음

붙임 : 1. 수정안 1부.

2. 수정안 조문 대비표 1부.

3.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부. 끝.

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
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2조 중 “영향이 미칠 수 있는 지역” 을 “영향이 미치는 지역” 으로 한다.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제 정 안	수 정 안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”이란 인천광역시 계양구·서구, 김포시 양촌면 일원 중 수도권매립지의 <u>영향이 미칠 수 있는 지역</u> 을 말한다.	제2조(정의) ----- ----- ----- ----- <u>영향이 미치는 지역</u> ----- ----- .

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 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를 설치하고,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”이란 인천광역시 계양구·서구, 김포시 양촌면 일원 중 수도권매립지의 영향이 미치는 지역을 말한다.

제3조(세입)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(이하 “특별회계”라 한다)는 수도권매립지와 관련하여 「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설치한 기금에서 인천광역시로 이전된 자금을 세입으로 한다.

제4조(세출)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의 환경개선 및 주민복지증진 사업
2. 그 밖의 환경개선사업 추진 시 필요한 사무에 관한 비용

제5조(잉여금의 처리)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.

제6조(예비비)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을 초과하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.

제7조(준용)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를 따른다.

제8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